학교법인	학교법인웅지학원 정관	문서번호	1-1-01(A)-0
		제정일자	03.03.05
		최근개정	25.10.10.
		주관부서	학교법인 법인사무국
		홈페이지공개	공 개

학교법인웅지학원 법인사무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 교육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회계·세무 전문 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2.08.>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웅지학원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웅지세무대학교 <개정 2012.10.25., 2023.02.08>

제4조(주소) ① 이 법인의 사무소는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웅지로 144번길 73에 둔다.
<개정 2012.03.16., 2017.05.26.>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1., 2012.07.25.>
② 제1항으로 보고한 정관에 대하여 관할청의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한다. <신설 2012.07.25.>

제2장 자산과 회계

제1절 자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9.09.21.>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은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는 이사장이 집행한다.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2조의2(예·결산보고 및 공시) ① 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에는 결산을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공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관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6.11.09.>

제3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

~~제13조 삭제 <2006.11.09.>~~

~~제14조 삭제 <2006.11.09.>~~

~~제15조 삭제 <2006.11.09.>~~

~~제16조 삭제 <2006.11.09.>~~

~~제17조 삭제 <2006.11.09.>~~

제3장 기관

제1절 임원

제18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7인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2. 감사 2인

제1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4년, 중임가능 <개정 2024.12.18.>
2. 감사 2년 단, 1회에 한하여 중임가능 <개정 2006.11.09.>

~~② 삭제 <2006.11.09.>~~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이 경우 임원의 성명·나이·임기·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9.>

~~② 삭제 <2006.11.09.>~~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06.11.09.>~~

제20조의2(개방이사의 자격)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는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06.11.09.>

제20조의3(개방이사의 정수) ① 이 법인의 개방이사의 수는 2명으로 한다. <신설 2006.11.09.>

제20조의4(개방이사의 선임) ① 법인은 개방이사의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재직 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3월전)에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개방이사 선임 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1.>

②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 제20조의2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③ 법인으로부터 추천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 내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관할청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9.21.>

~~④ 삭제 <2023.09.22.>~~

제20조의5(추천위원회) ① 추천위원회는 대학평의원회에 둔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 3인

2.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 2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09.21.>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미만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09.>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6.11.09.>
③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 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06.11.09.>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민법」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감사중 1인은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개정 2006.11.09., 2021.05.27.>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추천한 자를 선임한다. <개정 2006.11.09., 2009.09.21.>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20조의4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6.11.09.>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11.09.>
1.「사립학교법」제20조의2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2.「사립학교법」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3.「사립학교법」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일부개정 2024.09.22., 2024.12.18.]

제21조의2(상근임원의 임명)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상근임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② 상근임원은 1명으로 한다.
③ 상근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한다. <신설 2006.11.09.>

제22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개정 2006.11.09.>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9.09.21.>~~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 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 삭제 <2006.11.09.>~~

제26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6.11.09., 2009.09.21.>
②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③ 감사는 이사장, 이사 또는 법인의 직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09.22.>
~~④ 삭제 <2023.09.22.>~~

제2절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단,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08.22.>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8조(이사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개정 2006.11.09.>
② 이사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1.09.>
③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가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영상회의의 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2.07.25.>

제29조(이사회 의결제척사유) 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관계 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 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0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3개월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11.09., 2009.09.21.>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 <신설 2009.09.21.>

제31조(이사회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회의 소집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의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11.09.>

제3절 대학평의원회

제31조의2(대학평의원회 설치) 대학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평의원회(이하 "평의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6.11.09.>

제31조의3(평의원회의 구성) ① 평의원회는 대학의 교원, 직원,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되,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평의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며, 각 구성단위별 정수는 아래와 같다.

1. 교원 : 3명
2. 직원 : 3명
3. 학생 : 1명
4. 동문 : 2명
5. 대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2명

③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2항의 각 단위 중 어느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11.09.>

제31조의4(평의원회 의장 등) ① 평의원회에 의장 1인을 둔다.
②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의장 유고시는 의장이 지명한 의원이 이를 대리한다. <신설 2006.11.09.>

제31조의5(평의원의 임기)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평의원에 임명된 자가 임기 중 그 자격이 상실될 경우 해촉된다. 다만, 보궐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제31조의6(평의원회의 소집) 평의원회는 대학의 장 또는 재적평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한다. <신설 2006.11.09.>

제31조의7(평의원회의 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개정 2006.11.09., 2009.09.21.>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1조의8(평의원회의 운영규정) 평의원회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06.11.09.>

제4장 수익사업

제32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부동산 및 주택 임대업 <개정 2023.09.22.>
2. ~~<삭제 2025.03.28.>~~
3. ~~<삭제 2025.03.28.>~~

제33조(수익사업의 명칭) 제32조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법인 웅지학원 사업소를 경영한다.

제34조(수익사업체의 주소) 제33조의 수익사업체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천동 379, 380, 380-1, 380-2에 둔다. <개정 2012.03.16., 2023.09.22.>

제35조(관리인) ① 제33조에 규정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의 임용, 복무, 보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장 해산

제36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7.25.>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할청에 대한 청산 종결의 신고가 종료 된 후 다른 학교 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귀속된다. <개정 2012.07.25., 2018.12.26.>

제38조(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7.25.>

제6장 교직원

제1절 교원

제1관 임용

제39조(임용) ①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총장의 임기는 최대 4년 이내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4.05.14., 2006.11.09., 2023.02.08. 2023.09.22. 2024.12.18.>
② 총장이 임기 중에 정년 도래시는 정년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 임기를 연장시킬 수 있다. <신설 2014.02.27., 2023.02.08.>
[종전 ③항을 ②항으로 이동 <2023.09.22.>]
③ 총장을 제외한 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신설 2023.09.22.>
④ 제1항 이외의 교원 중 조교수, 부교수,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이하 교수)의 임용은 교원인사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4.03.16., 2006.11.09., 2012.07.25., 2018.10.30., 2023.02.08., 2023.09.22.>

⑤ 제4항 이외의 전임교원(비정년트랙) 및 비전임교원은 당해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6.11.09., 2015.11.18., 2023.02.08., 2023.09.22., 2025.07.28>
⑥ 대학교육기관의 부총장, 처장 등의 보직은 총장의 제청을 받아 이사장이 보한다.
<개정 2009.09.21.>
⑦ 제1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9., 2015.11.18., 2023.02.08.>

제39조의2(교원의 계약제 임용) ① 정관 제39조제3항,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계약조건을 정하여 행한다. <개정 2005.02.28, 2006.11.09., 2015.11.18., 2023.02.08., 2023.09.22.>

1. 근무기간 (단, 계약기간은 임용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3.09.22.>
   가. 교수 : 정관 제47조에 규정하는 정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본인이 원하는 경우 또는 교수로 최초 임용되는 경우(부교수가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는 제외)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0.03.15.>
   나.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개정 2012.07.25.>
2. 급여 :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3. 근무조건 : 교수시간 및 소속 학과 등에 관한 사항.
4. 업적 및 성과 : 교육·연구실적·학생지도 및 대학발전기여도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3.09.22.>
5. 재계약 조건 및 절차 : 근무기간 종료 후 다시 임용되는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08.22., 2023.02.08>

~~② 삭제 <2015.11.18.>~~
~~③ 삭제 <2015.11.18.>~~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조건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원의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조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5.11.18., 2016.05.19.>

제39조의3(비전임교원) ① 총장은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명예특임교수, 산학특임교수, 학연교수, 객원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강사 및 기타 별도로 정한 비전임교원을 각각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원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09.22.>

[종전 제39조의3 삭제 <본조신설 2023.09.22.>]

제39조의4(특별채용)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원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사장은 기간을 정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2. 교원이 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 한 때.
3. 임용 예정직에 상응한 연구실적, 근무실적 또는 기타 자질이 우수하여 학교에 꼭 필요한 자를 임용하는 경우.
4.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으로서 경쟁시험에 의하여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5. 타 우수대학에 근무하는 교원을 본 대학 교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다만,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2항은 준용한다. <신설 2015.11.18., 2016.05.18.>

④ 총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원을 임명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신설 2016.05.18., 2023.02.08.>

~~제39조의5 겸임교원 등 삭제 <2005.02.28.>~~

제2관 신분보장

제40조(휴직의 사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09.>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병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징집 또는 소집 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된 때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하게 된 때
6. 국제기구·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7. 자녀(만8세 이하, 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9.09.21., 2012.07.25.>
8. 관할청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12.07.25.>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제41조(휴직의 기간)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11.09.>

1. 제40조 제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단, 교원은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용기간 중의 잔여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07.25.>

2. 제40조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
3. 제40조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4. 제40조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의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5. 제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40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09.21.>
7. 제40조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8. 제40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40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연수·해외유학·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2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40조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직을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제43조(휴직교원의 처우) ① 제 40조 제 1호 및 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 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 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② 제 40조 제 2호 내지 제 4호와 제 6호 내지 제 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1.09.>

~~제44조 삭제 <2006.11.09.>~~

~~제45조 삭제 <2006.11.09.>~~

~~제46조 삭제 <2006.11.09.>~~

제47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를 준용한다. 단,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4.05.14.>

제47조의2(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대한 실시시기,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23.09.22.>

제47조의3(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파면 또는 해임 되거나 근무 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5.07.28., 2025.10.10.>

제3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8조(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총장은 제외한다)의 임용 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6.11.09., 2023.02.08>

제49조(인사위원회의 기능)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임용(신규임용, 재임용, 승진임용, 기간제임용 등) 제청·동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9., 2023.02.08., 2023,09,22.>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2006.11.09.>
3.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2.08>

② 인사위원회가 제39조의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임용제청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 전(前)임용기간 중 제39조의2 제1항 제4호, 제5호, 제6호 및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05.02.28., 2006.11.09., 2018.11.18., 2023,09,22.>

1.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2. 교수·연구·산학협력 및 학생지도에 대한 능력과 실적
3.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③ 제2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업적평가규정으로 정하고 임용계약서에 반영한다. <신설 2023.09.22.>

제50조(인사위원회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총장, 부총장, 처장 등으로 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3.15., 2023.02.08., 2023.09.22.>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51조(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장으로 한다. <개정 2005.02.28., 2010.03.15., 2023.02.08.>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총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02.08.>

제52조(인사위원회의 회의소집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3.02.08.>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3조(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2.08.>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54조(인사위원회 간사) ① 인사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02.08.>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02.08.>

제54조2(회의의 비공개와 비밀유지) ① 위원회 회의의 결과는 의결된 내용만을 공개하며 의결에 이르기까지의 토론과정과 표결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자는 총장의 허가를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가 알고 있는 회의내용 및 관련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엄수하고 이를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9.22.>

제55조(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2절 징 계 <개정 2023.09.22.>

제56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사립학교법과 기타 교육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교원이 학기도중 해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사임하였을 때
5. 교직원이 교내에서 집단행위, 집단농성 등 해교행위를 하였을 때
6. 교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명백히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 등을 통하여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공익신고자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신고 또는 의견표명은 제외한다. <개정 2025.07.28., 2025.10.10.>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제56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 확인하여야 한다.

1. 제56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다른 징계사건에 우선하여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④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제57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경우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 및 제한대상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57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에 따라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라.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7조의2에서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
2. 외부위원은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제57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교원의 임용권이 학교의 장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64조2의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58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9조(징계의결의 기한)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등 성(性) 관련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60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0조의1(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제60조에 따른 제척 또는 제1항에 따른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1조(징계의결의 요구)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 5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1조의2(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제61조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 사유를 기재한 설명서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을 징계의결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2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할 때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3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5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교원의 근무태도 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법령으로 정하는 징계기준 및 징계의 감경기준 등에 따라 징계의결을 하여야 한다.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임용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제2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 및 징계처분사유설명서를 징계대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임용권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의2(징계 사유의 시효) ①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1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가「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및「교육공무원법」 제52조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 그 밖에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일반직 직원 중에서 그 임명권자가 임명한다.

제64조의2(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3(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절 사무직원

제65조(자격) ①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은 일반직, 연구직, 기술직 및 기능직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4.02.07., 2015.01.05., 2015.11.18.>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이 법인과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해임처분을 받을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 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4.02.07.>

~~③ <삭제 2015.11.18.>~~

④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신설 2015.11.18.>

제66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승급·전직·전보·강임·휴직·직위해제·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임용권자가 공개채용, 전형 또는 근무성적 기타 능력의 실증에 의하여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제67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68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및 민간인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직무의 난이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하도록 직급 및 근속 기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9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정년) 일반직원의 정년은 인사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10.02.08.>

제71조(징계)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정관 및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3.02.08., 2023.09.22.>
~~② 삭제 <2023.02.08.>~~

제7장 직제

제1절 법인

제72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두며, 국장은 참여로 보한다.
② 법인사무국에는 총무과와 기획과를 두며, 각 과장은 부참사로 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절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

제73조(총장 등) ①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총장을 둔다. <개정 2023.02.08.>
② 총장은 교무를 통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대학을 대표한다.
③ 학교법인이 설치하는 대학에 3인의 부총장 행정부총장, 글로벌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을 둘 수 있으며, 조교수 이상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5급(부참사) 이상으로 보할 수 있다.<개정 2022.11.15., 2023.02.08., 2025.05.15>
④ 부총장은 총장을 보좌하며 총장 궐위 시에는 행정부총장, 글로벌부총장, 산학협력부총장 순으로 총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6.11.09., 2009.09.21., 2025.05.15.>

제74조(하부조직) ① 대외협력처・교학처・사무처・기획처를 둔다. <개정 2010.02.08, 2012.04.20, 2015.01.05., 2016.05.18., 2023.02.08.>
② 교학처장, 대외협력처장, 기획처장 및 사무처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겸보할 수 있으

며, 5급(부참사) 이상의 사무직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발전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행정 등 해당분야의 외부전문가를 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0.02.08., 2012.04.20., 2012.07.25, 2015.01.05., 2016.05.18., 2025.07.28., 2025.10.10.>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03.16., 2004.05.14., 2005.02.28., 2006.11.09.>

제74조의2(산학협력단) ① 대학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15.01.05., 2023.02.08>
② 산학협력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웅지세무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5.01.05.>

제75조(부속시설) ① 대학에는 필요한 부속시설을 둘 수 있으며, 법인사무국 내에 설립자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2.11.15.>
② 부속시설에 각각 장을 두며 부속시설의 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겸보하거나 또는 사무직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2.07.25.>
③ 부속시설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9.09.21.>
④ 부속시설에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부서장은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하되 그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11.09.>

제76조(도서관) ① 도서관에 수서과, 열람과를 두며 수서과장은 부참사로 보하고. 열람과장은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일반직 또는 교원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정원

제77조(정원) 법인 및 각급 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개정 2016.05.18., 2023.10.06>

제8장 보칙

제78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 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한다.

제79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80조(청렴의무)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09.22., 개정 2025.05.15.>

제80조의2(행동강령) ① 교직원은 제80조에서 정한 청렴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행동강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3.09.22., 개정 2025.05.15., 2025.10.10.>

1.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제한
   교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편의 기타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학교법인, 학교경영자 또는 대학의 장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나. 학교법인 또는 학교경영자의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다. 그밖에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직위 남용 및 부당한 행위 금지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인사, 재정, 계약 등 사무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개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권개입, 알선, 청탁, 압력행사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회피 의무
   교직원은 직무 수행 중 본인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 등이 직무관련자로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경우 지체없이 이를 학교법인 또는 대학의 장에게 신고하고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조치
   교직원이 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주의·경고 등 필요한 제재조치를 하여야 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위반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절차를 따른다.
5. 청렴의무 실천 및 예방교육
   학교법인과 대학은 교직원이 행동강령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 및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교직원은 이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동강령을 위반한 경우, 임용권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여 징계 등 필요한 제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동강령 준수 여부를 인사평가·보직임명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2023.09.22.>]

제81조(설립당초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 년 월 일	임기	주 소
이사장	박윤희	1968. 01.18	4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 12-102
이 사	송상엽	1966. 09.01	4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아) 12-102
이 사	신영재	1938. 05.30	4	광주시 동구 학동 750-1 삼익세라믹(아) 2-703
이 사	김소남	1938. 06.18	4	광주시 남구 월산동 110-5 신우(아) 8-201
이 사	박종후	1941. 06.10	2	경기도 용인시 수지읍 상현리 832 금호베스트빌 254-1501
이 사	이수철	1949. 09.25	2	인천시 부평구 창천동 176 대우(아) 107-903
이 사	오성일	1965. 09.14	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927 반포(아)113-102
감 사	황용현	1959. 07.07	2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15 임광(아) 6-310
감 사	황영식	1961. 03.06	1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7-1 미성(아) A - 801

부 칙 <1판-제정 2003.03.05.>
이 정관은 2003년 03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판-개정 2004.05.14.>
이 정관은 2004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판-개정 2005.02.28.>
이 정관은 2004년 05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4판-개정 2005.02.28.>
이 정관은 2005년 0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5판-개정 2006.11.0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6년 11월 0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임기간의 예외) 개정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그 결원발생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제3조(학교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부 칙 <6판-개정 2009.09.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의 규정은 2009년 0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개정 정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장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학교의 장의 임기 종료일 까지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7판-개정 2010.02.08. 부칙 누락)

부 칙 <8판-개정 2010.03.15.>
이 정관은 2010년 0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판-개정 2012.03.16.>
이 정관은 2012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0판-개정 2012.04.20. 부칙 누락)

부 칙 <11판-개정 2012.07.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조는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임강사에 대한 경과 조치) 종전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전임강사는 이 개정 정관에 따라 조교수로 보며, 전임강사 근무경력은 조교수 근무경력으로 본다.

부 칙 <12판-개정 2012.10.25.>
이 정관은 2013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3판-개정 2014.02.07.>
이 정관은 2014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4판-개정 2014.02.27.>
이 정관은 2014년 0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5판-개정 2015.01.05.>
이 정관은 2015년 01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6판-개정 2015.11.18.>
이 정관은 2015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17판-개정 2015.11.19. 부칙 누락)
(18판-개정 2016.05.18. 부칙 누락)
(19판-개정 2016.05.19. 부칙 누락)

부 칙 <20판-개정 2017.05.26.>
이 정관은 2017년 0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1판-개정 2017.08.22.>
이 정관은 2017년 08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2판-개정 2018.10.30.>
이 정관은 2018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3판-개정 2018.11.18. 부칙 누락)

부 칙 <24판-개정 2018.12.26.>
이 정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5판-개정 2022.11.29.>
이 정관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6판-개정 2023.02.08.>
이 정관은 2023년 02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7판-개정 2023.09.22.>
이 정관은 2023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8판-개정 2024.12.18.>
이 정관은 2025년 01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9판-개정 2025.02.19.>

이 정관은 2025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0판-개정 2025.05.15>

이 정관은 202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1판-개정 2025.07.28>

이 정관은 202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32판-개정 2025.10.10>

이 정관은 2025년 11월 0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5.07.28.>

법인 직원 정원

총	계	3명
	일반직계	3명
	7급(부주사)	1명
	8급(서기)	1명
	9급(부서기)	1명

(별표2) <개정 2025.07.28.>

대학 직원 정원

총 계	40인
일반직계	28인
2급(참 여)	2명
3급(부참여)	2명
4급(참사)	2명
5급(부참사)	4명
6급(주사)	4명
7급(부주사)	4명
8급(서기)	5명
9급(부서기)	5명
기술직계	2명
5급(사서부참사)	1명
9급(사 서 보)	1명
기능직계	10명
8등급계	1명
운전기사	1명
9등급계	3명
건축기사보	1명
전기기사보	1명
수도기사보	1명
10등급계	6명
경노무원	6명